

2019년도 제1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8. 19.(월요일), 16: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4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500건(안건번호 제2019-93051호~95514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4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6쪽의 단순도판 서비스 제공자명, 6쪽 및 9쪽 도메인 판매 사이트명, 8쪽의 사행성 사이트 주소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해당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C 위원 : 동의하며 나머지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단순도판 서비스 제공자명, 도메인 판매 사이트명, 사행성 사이트 주소는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93051호~95514호로 총 6,500건임

안전번호 제2019-9305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중국 애니메이션 한 화의 전체분량을 블로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게시자는 직접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우리말 자막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19-93052호, 제2019-93053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한 화의 전체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게시자는 우리말 자막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번역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든 부분에 인정됨

우리말 자막으로 번역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면 2차적저작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애니메이션 저작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93051호~제2019-93053호 한 화 전체분량의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과거 영상저작물과 함께 자막을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다고 대답함
우리말 자막을 삽입한 애니메이션 영상은 우리말 자막 없이 애니메이션 영상만 제공한 경우나 우리말 자막파일만 제공한 경우에 비해 해당 저작물에 대한 국내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큼
- B 위원 : 애니메이션 한 화 전체 분량을 게시한 것으로 해당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A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93051호~93053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상저작물과 함께 자막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상물 없이 자막파일만 제공하는 경우에 비해 해당 애니메이션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93054호~93056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영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

물 실행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93055호, 제2019-93056호에서 제공하는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지만, 함께 제공되는 Decryptor 파일을 설치하면 쉽게 불법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93054호~93056호 웹하드의 영화 불법복제물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웹하드는 일반적인 게시판형 웹하드로 보이지 않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브라우저 프로그램 실행 화면을 제시하면서)해당 웹하드는 전용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검색창을 통하여 이용 가능함
- C 위원 : 답변이 되었음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2018년~2019년 국내에서 개봉한 최신 영화 저작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93054호~93056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93057호~95514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프로그램, 게임, 만화, 어문, 영상물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안건번호 제2019-93250호, 제2019-93252호는 네이버 밴드에서 현재 상영 중인 영화 ‘기생충(2019), ‘알라딘(2019)’을 제공하고 있는데, 복제·전송자의 아이디가 동일함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9368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배우 ‘이정재’가 주연한 우리나라 영화 ‘사바하(2019)’의 복제물을 판매 중인 사안인데, 해당 영화는 2019. 2. 20. 개봉하였음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94755호는 2019. 8. 14. 개봉하여 현재 예매율 1위의 미국영화 ‘분노의 질주: 홉스&쇼(2019)’ 복제물을 모바일 웹하드에서 제공 중인 사안임

(해당 영화 정보를 제시하면서)위 영화의 국내 권리자는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코리아(유)’임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화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서는 캠버전일 가능성이 크며, 화면에 “☆☆☆☆☆☆.☆☆☆” 마크가 삽입되어있음

(해외 사이트 접속화면을 제시하면서)해당 사이트는 러시아어로 서비스되는 사행성 사이트로 보임

- C 위원 : ‘분노의 질주: 홉스&쇼(2019)’ 영화의 재생화면은 지난 제3분과위원회(2019. 7. 29. 개최, 제2019-131회)에서 심의한 영화 ‘알라딘’ 게시물과 유사한 경우로 보임

‘알라딘’ 복제물에 삽입되어 있는 사행성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을 한 것으로 기억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95461호는 ‘학산문화사’에서 출판한 만화 ‘진격의거인’ 복제물을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다운로드 화면,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압축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다수의 스캔 파일이 제공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19-95492호는 2019. 7. 12. 발매한 Billie Eilish(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임
(다운로드 화면,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보호원에서 설정한 저작물명은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로 되어 있지만,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면 약 100개의 최신 해외 음원파일이 있음
- C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하며 모두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B 위원 :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모두 데드카피하여 전송한 사안들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A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93057호~95514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93051호~95514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1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8. 26.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